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대응 통합훈련 실시

노동부는 8.17(목)부터 8.18(금)까지 본부 산업안전보건국, 46개 지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기술국 전 직원이 참여하는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대응 자체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2006년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노동부가 주관부처로서 훈련을 주관했다. 훈련 방법은 화학공장 유해물질 유출 및 화재·폭발 사고에 관한 상황을 설정하여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및 복구체계를 연습하고 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간의 효율적 업무협조를 통한 조기수습 능력을 점검하였다.

위기시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 메뉴얼」의 실효성 및 효율적인 작동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훈련기간 동안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은 화학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 메뉴얼을 자체 검토하여 유관기관간 효율적인 업무체제를 구축하여 노동부의 화학공장 화재·폭발·유출 사고의 조기대응능력을 강화하였다.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점검 실시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지청장 朴鍾善)은 '06년 7월 10일부터 8월말까지 관내(영등포, 강서 및 양천구)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40개소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지도점검 하였다.

경영여건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또한 노사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의식과 자율적인 산재예방능력이 미흡하여 산재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를 필요로 하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지도점검은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여부,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 및 사용,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다.

지도점검 결과 위험작업설비의 덮개 미설치, 소음발생작업 종사자에게 귀마개 미지급 등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하여 위험예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27개 사업장 49건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지시하여 개선하였다.

또한 서울남부지청은 산업재해 취약계층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금번 실시하는 소규모사업장 지도점검외, 비정규직근로자고용 재해발생사업장점검, 지자체소속 비정규직안전보건점검, 외국인고용 재해발생사업장점검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

『사망재해 20대 다발작업지도』 점검

서울지방노동청서울남부지청(지청장 朴鍾善)은 '06년 9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내(영등포, 강서 및 양천구) 건설현장이나 제조사업장에서 협착, 전도, 감전, 충돌, 낙하·비래 위험 등으로 사망재해발생에 취약한 20대 작업을 수행하는 2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사망재해 20대 다발작업』이란 건설현장의 개구부(開口部)인접,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고소(高所)작업 등과 제조사업장의 지게차운전, 유해위험물질 취급 등 각각 20개 위험작업으로 그간에 발생한 사망재해 발생을 토대로 선정하였다.

서울남부지청의 이번 지도점검은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한 필요조치 이행여부, 협착, 전도, 감전, 충돌, 낙하·비래에 의한 재해예방조치, 노사간의 협력적 산업재해예방활동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개선토록 지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서울남부지청은 '06년 상반기 『사망재해 20대 다발작업』 지도점검을 지난 6월5일부터 7월말까지 건설현장과 제조사업장 26개소를 실시하여 안전난간이나 웬스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5건을 지적하여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시정토록 지시하여 개선 완료한 바 있다.

제조·건설업의 『사망재해 20대 다발작업』

순위	건설업	제조업	비고
1	개구부 인접작업	설비내부 작업	'05년도 대상 작업
2	작업발판 미설치 고소작업	지게차 운전작업	
3	전기취급 또는 인근 작업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	
4	슬레이트 또는 지붕 위 작업	천정크레인 취급작업	
5	크레인 자재 인양작업	기타 동력기계 취급작업	
6	이동식 틀비계상의 작업	전기 취급작업	
7	굴삭기 관련작업	적재자재 취급작업	
8	사다리 이용작업	리프트·승강기 이용작업	
9	건설기계(굴삭기 제외) 관련작업	청소 등 정리작업	
10	거푸집 설치·해체작업	사출성형기 취급작업	
11	건물외벽 작업	지붕 위 작업	'06년도 추가 대상 작업
12	철골구조 설치작업	혼합기·분쇄기 취급작업	
13	수직방향 자재 인력운반작업	용접작업	
14	토사작업	하물 운반작업	
15	이동통로에서의 작업	기계설비 등 설치·해체작업	
16	구축물 붕괴	이동식 크레인 취급작업	
17	비계 설치 해체작업	컨베이어 이용작업	
18	안전시설물 설치·해체작업	프레스·전단기 취급작업	
19	작업발판 설치·해체작업	트럭 관련 작업	
20	갱폼 조립·해체·인양작업	외벽 작업(청소·도색)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

경남기업, 협성종합건설 등 재해율이 낮은 건설업체 70곳이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대 건설업체 중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매년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업체 70개를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2006. 8월 ~ 2007. 7월) 신규 건설공사현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와 공사 종료시까지 확인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70개 건설업체를 규모별로 보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가 42개 업체, 100위 이상 200위 이내가 28개 업체로 100위 이내 업체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에 신규로 선정된 업체는 17개이다.

위험기계 검정제도 현실에 맞게 바꾼다

- 노동부, 7일 안전인증제도 도입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입법예고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업체는 앞으로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발암성 물질 등 유해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9월 7일 입법예고 했다.

지난 '04년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한 사망재해자 1,346명 중 기계·설비 등의 불량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199명(14.8%)에 이르나, 현행 검사제도가 기계·기구 등의 완성품에 대한 제품성능만을 확인하는데 그쳐 제조·유통단계의 불량제품 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제조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안전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안전인증제”가 도입되면 위험기계기구·설비,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는 자는 반드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제품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등을 할 수 없다. 한편, 생산기술이 보편화되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계류와 보호구 등은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신고한 후 제품을 생산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의무를 강화하여 작업장에서 유해물질의 농도를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토록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행 “자체검사”와 “정기검사”로 병행 실시하던 검사제도를 「사용중검사」로 일원화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입법예고 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9월 27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7월부터 시행하되, 안전인증제는 제도시행에 따른 사업장 준비를 고려하여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설명 ●

1. 제조·유통단계의 검사·검정제도 개선

■ 개정배경

현행「검사·검정제도」는 기계·기구 등의 완제품에 대한 제품성능만을 확인함에 따라 불량제품의 제조·유통 및 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곤란하다. 또한, 현행 「안전인증」제도는 제조자의 신청에 따라 인증하는 임의적 제도라서 법적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제품의 성능검정뿐만 아니라 제조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안전인증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검사·검정제도 개선안】

구분	현행		개정안	
	검사	검정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의무주체	제조·수입자	제조·수입자	국내외 제조자	제조·수입자
실시주체	노동부장관	노동부장관	노동부장관	제조·수입자
대상	위험기계·기구·설비(7종)	방호장치 및 보호구(25종)	위험기계·기구·설비, 보호구(29종)	안전인증대상의 위험기계, 방호장치·보호구(8종)
심사내용	제품의 성능	제품의 성능	제품의 성능 및 품질관리시스템	제품의 성능

■ 개정내용

(1) 안전인증제 도입

▲ 위험기계·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는 자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며,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도록 한다. ▲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등을 할 수 없다.

(2) 자율안전확인 제도 도입(안 제35조 내지 제35조의3)

▲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험기계·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으로써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제품의 시험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것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품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신고하고 생산토록 하고, 제품에 자율안전 확인표시를 하도록 한다.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등을 할 수 없다.

■ 기대효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 등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며, 제조자 스스로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의 책임생산을 유도한다.

2. 사용단계의 검사제도를 사용중검사로 일원화

■ 개정배경

현재 노동부장관은 사용중인 위험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1~2년을 주기로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주는 1월~2년을 주기로 스스로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가 자체검사 대상과 내용이 중복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검사의 비효율과 사업주의 불편을 초래한다.

■ 개정내용

▲ 정기 및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위험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사용중검사를 받도록 한다.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검사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사용 중 검사를 면제한다.

■ 기대효과

정기검사와 자체검사 통합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고, 노사협력을 통한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한다.

3. 사업주의 유해인자 노출수준 준수 의무 강화

■ 개정배경

현재 698종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노출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주로부터 하여금 준수토록 권고하고, 동 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설비 등을 개선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된 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므로 근로자 건강보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는 작업장의 노출농도를 항상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개정내용

발암성 물질 및 직업병 유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해인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에게 작업장내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관리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기대효과

사업주의 유해인자 관리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유해성이 높은 물질로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직업병을 감소시킨다.